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당 해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새로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징계 자체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다루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징계의 발효시점을 반드시 당초의 해고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Q** 부당 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정계시 징계 발효 시기

**A**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 부당 해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자를 원칙에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근로자가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부당 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당초 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를 이유로 재정계할 경우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 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된 근로자를 당초의 해고사유와 같은 사유로 해고보다도 가벼운 징계6월의 징계를 하면서, 그 징계의 발효시점을 새로운 징계시점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한 바는 없으나, 사용자가 새로운 징계를 할 경우 그 발효시점을 재정계시점으로 하므로써 근로자는 당초의 부

**Q** 상사를 비방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A** '부하가 상사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그 소속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귀사 취업규칙상의 '상사를 비방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모든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한국중합노무법인원사무(031-877-7582-3)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으로 고지한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사용기간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적용합니다.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아울러 기본요금은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Q** 전기사용 계약전력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계약전력은 전기사용 신청시 고객과 한전간에 약정하는 사항으로써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합니다. 계약전력의 결정은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과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각 75kW 구간별로 정해진 계약전력 환산율(100~60%)을 곱한 것이며,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1kVA를 1kW로 봅니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사용설비에 의해 계약전력을 결정하며,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일반적으로 수전용 변압기설비에 의해 계약전력을 결정합니다.

**Q** 최대수요전력과 요금적용전력은 무엇인지요?

**A** 최대수요전력은 15분계 누산형 최대수요전력계에 의하여 계량되는 수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계를 부설한 고객은 매월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에 의해 요금적용전력이 결정됩니다. 요금적용전력은 전기요금 기본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말하며 최대수요전력계 부설하지 않은 저압공급 고객은 계약전력이 곧바로 요금적용전력이 되며, 최대수요전력계를 부설한 고객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

**Q** 450시간 초과사용 추가요금은 왜 부과하나요?

**A** 450시간 초과사용 추가요금은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계약전력을 증설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에 대하여 월간 450시간을 초과한 경우 한전은 1년중 첫번째 달은 위약금 부과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초과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당요금 단가의 150%를 적용하여 위약금으로 받으며 이 위약금이 전기요금청구서에 추가요금으로 명시되어 부과됩니다.

☞ 문의 :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023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신경외과 과장 **배준석**



흔히 증상으로는 주로 밤에 증상이 더 심하며,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과 손바닥에 저린 증세가 나타나며, 드물게 팔꿈치나 어깨까지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여 목 디스크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손이 왜 저릴까요?**

환자분들은 손이 저리면 목 디스크인가? 하고 불안해하거나 혈액순환이 안돼서 그런가보다 또는 풍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서 약국에서 임의로 혈액순환 개선제를 사드시거나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0~60대 여성 환자분들 중 이런저런 치료를 다해보고도 낫지 않아 의원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초

혈액순환장애로 인해 손이 저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실제로 손저림증의 90% 이상은 손목을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각종 원인에 의해 눌려서 발생하는 수근관 증후군이 원인입니다.

집안일을 많이 하시거나, 손으로 빨래를 하고 주방일을 많이 하는 가정주부들이나, 발일과 같은 농사일을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나,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근로자,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일하다가 손목을 흔들어 털면 조금 나아지고, 손을 주무르는 동작을 자주 하게 되고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거나, 손끝의 감각둔화로 수저를 놓치는 일이 생기는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진단은 손 저림증의 임상양상이나 손목의 정중신경부위를 타진시 증상이 발생하는 틈빌징후, 손목을 1분 정도 굴곡시 증상이 발생하는 팔렌 검사 등이 나타나면 강력히 의심하고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신경외과 (031-539-9169)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이웃에서 법정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청구의 가능여부】**

**Q** 문제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자 甲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저의 토지경계에 바짝 붙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 위 건물의 철거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242조에서 "건물을 축조함에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인접지 소유자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이 건축에 착수한 후 1년 이내에 건물의 변경 또는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건축공사의 완성도에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철거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43조)

그러나 명백히 경계선 부근의 거리 제한에 위반하지 않고 단순히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 또

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례는 "인접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가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청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受忍)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성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 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 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7.22. 96다166153)라고 하고 있고, 또한 "이웃토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이를 감수해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입는 정도의 고통은 감내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9.14. 80다2859)라고 판시하여 거리제한을 준수하여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폭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성적 접촉을 말합니다. 또 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포함됩니다.

성폭력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여성의 80% 정도가 가벼운 성희롱에서 강간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80%가 아는 사람에 의

한 피해입니다. 성폭력은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에게 가하는 폭력 범죄입니다. 강한 피해자의 98%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일방적인 폭력, 인격 침해를 당한 것입니다. 당신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고, 당신에게는 결코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이런 행동을 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성폭력 관련 상담소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각 상담기관 전화번호는 뒷장에 있습니다.) 사위나 질 세척을 하지도 말고 즉시(72시간 내) 가까운 산부인과로 가서 증거채취, 성병검사, 임신방지 등의 응급조치를 받으십시오. 고소를 하기 원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당신은 이런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파괴시키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일어났다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불면증, 악몽, 집중력 결여, 근심, 자신감 상실, 공포, 혐오감, 분노, 순결 상실감,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잊고 싶어합니다. 또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외국에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 하더라도 양도할 때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외국환거래규정'이 완화되고,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의 송금 및 사후관리 절차는 귀하의 주거래 외국환은행에서 알아보시기로 하고, 국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국내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취득 시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기의 소득 및 취득자금의 원천을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 보유 시에도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목적인 경우에는 국내에 납부할 세

금이 없습니다만, 타인에게 임대하여 소득이 있다면, 국내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 처분 시에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와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1개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주택을 취득하였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해외주택 1개만을 보유하고 처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 받지 못하나, 해외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자가 아니었던 자가 국내에 복귀한 후 5년 이내에 해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 안전한 전기사용 365일 행복보장



대표 안 병 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전기설비의 점검 및 진단  
기술자문 및 대관업무 상담

REAL TV - 『TV 속 세상』 2007년 5월 22일(화) 방영업체



변압기 부하 측정



발전기 엔진오일 점검